

의안번호	제 46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12월 22일 【 제 126 회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12월 19 일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2006.12.19.

제 출 자 : 음성군수

1. 안건명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하고자 함

3. 개정주요골자

-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
: 환경보호과 →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 기반시설부담금 업무 신설 : 지역개발과
- 청소년 수련원 운영 관리 업무 : 문화공보과 → 산림축산추진단

4. 조례개정안 : 별지붙임

5. 신 · 구 조문대비표 : 별지붙임

6. 조례개정근거법령 및 공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06. 10. 23. ~ 11. 12.

-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 없음

9. 제안자 의견

-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이관,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에 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기반시설부담금 업무

제3조의2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소년 수련원 운영 관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① (생략) ②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7. 환경보호과장 가. ~ 파. (생략) 하.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삭제) 12. 지역개발과장 가. ~ 카. (생략) (신설)	제3조(실과의 설치)① (현행과 같음) ②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7. 환경보호과장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삭제) 12. 지역개발과장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기반시설부담금 업무
제3조의2(여유기구) (생략) 1.~10. (생략) (신설)	제3조의2(여유기구)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청소년 수련원 운영 관리